

민간조사를 활용한 기업 자체 감찰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Use on Private Sector Self-inspection System

Ha Sub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116, Samseongyo-ro 16-gil, Seongbuk-gu, Seoul, Korea

Abstract

Since 2000, according to the sense of community has been expanded to also increase the demand for police service and police service as an alternative to the lack of the development of Guard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were private. The Private Guard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with a focus on the development of crime prevention and public safety services. Not getting the area of civil service has expanded.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ecurity services, the lack of money available to pay will receiv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ncluding the rights of and remedies have been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research services is enabled b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right to recover damages remedies have been used to. However, in the case of our country to be able to provide a security service private investigation do not have enacted law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Due to these problems, including the fact that the investigation of illegal companies referred to in the form of small chores and sleep in, so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in developed countries need to introduce a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has been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ecent surge in industrial espionage, breach of trust in the act of private companies, private companies, such as employees' disagreeable behavior problems do have a serious impact on corporate image, and in the conclusion to the life and death of businesses affected.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se problems, and supervis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se problems for

* Tel. +82-02-760-4077. Fax. +82-02-760-4463. E-mail. sublh@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pr. 6, 2014 / Revised: May. 6, 2014 / Accepted: May. 13, 2014

the private sector to prevent corruption and disagreeable behavior by the private investigator and an internal investigation was to present inspection methods.

Key words: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companies, inspection, auditing,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Act

국문초록

2000년대 이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되어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경찰이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민간경비로 많이 이양된 상황이다. 민간경비업은 1950년대 이후부터 부족한 치안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성장하는 속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예방적인 차원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 수사에 대한 불만족, 미야 찾기,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민간경비 영역의 확장을 요구하는 이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에는 민간조사가 허락되지 않아 민간조사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자들의 잘못된 욕구로 사실조사,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형태의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조사는 단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산업스파이, 민간기업 내 배임행위, 민간기업 직원의 비위행위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부정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을 활용한 민간기업의 내부 조사·감찰제도를 제안하였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민간조사업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업무영역을 민간기업의 내부 조사·감찰을 대행하는 영역까지 확장하여 민간조사업법을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자 한다.

주제어: 민간조사관, 민간기업, 감찰, 감사, 민간조사업법.

1. 서론

2000년대 이후 사회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부족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경비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발달한 서비스로서, 활동영역이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경찰의 사건조사에 대한 불만족, 재판 시 필요한 자료제공 확보욕구의 증가, 미야 및 실종자 수색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민간경비와 경찰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조사제도는 금전을 지불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기존의 민간경비가 사전 예방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민간조사제도는 사후처리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인 허가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심부름센터 및 홍신소 등의 불법행위 방지와 국가 사법기관의 한계, 치안여건의 변화, 재산범죄의 합리적 해결, 전문지식필요사건의 증가 등과 같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이 증가하고 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내부의 기밀유출 및 영업비밀의 유출, 배임, 직원의 비위행위 등과 같은 기업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내부감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감찰 및 조사를 위하여 현재까지는 외부기관 감사 혹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는 했지만, 서류위주의 검토와 조사가 전부인 감사로는 윤리성을 논하는 문제 및 기동성이 요구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 조사·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행위 혹은 기타 행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경찰보다는 민간경비를 통하여 조용히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민간기업에서 문제가 발생 시 사법기관보다 민간조사관을 더욱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승철의 연구(2008)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과 기업이 공적 사법기관의 수사보다는 민간조사관에게 의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아나 실종자의 처리, 경제범죄의 처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치안 서비스 제공 등을 예로 들면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도입에 있어서 민간조사업의 업무가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에 따른 규제 또한 필요함을 역설 했다(이승철, 2008: 255).

그리고 신성균·박상진의 연구(2009)에서도 민간조사관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에서 산업보안 분야에서 공적인 사법기관의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 대안으로 민간조사관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신성균·박상진, 2009: 199-200).

민간기업이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보다 민간조사관을 더욱 선호하는 이유로는 첫째, 고객들은 처음에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먼저 연락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지연 된다는 것이다(이승철, 2008: 258). 둘째, 개인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경찰의 개입은 제일 나중에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내부에서 행해지는 범죄에 있어서 회사는 경찰들이 조사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회사나 기업의 이윤보다는 경찰의 관점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승철, 2008: 258).

셋째, 개인회사들은 기밀로 남기고 싶은 정보를 경찰의 수사를 위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나 고객의 정보 또는 수요자 등의 자세한 것들, 그리고 다른 회사의 기

밀사항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이승철, 2008: 258).

넷째, 법인회사들은 민간조사업체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경찰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할 수 있다. 즉 어떤 민간조사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민간조사관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이승철, 2008: 258).

다섯째, 어느 직원을 접근시키고 어떤 정보를 조사원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통해서 회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이승철, 2008: 258). 여섯째, 기업은 언제든지 수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승철, 2008: 258).

이렇듯 민간조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 내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자료는 관련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찾아 연구에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간조사관의 의의

1) 민간조사관의 정의

민간조사관은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사적인 신분을 가진자가 필요에 의하여 제화나 금전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조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민간조사업’이라 하며, 그리고 민간조사업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자를 ‘민간조사업자’라 한다.

즉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나 조사업무는 공식적인 직책을 뜻하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개인으로부터 의뢰나 부탁을 받고 조사를 하는 제도를 민간조사제도라 한다. 이러한 민간조사제도는 영어로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라 부르고 있다(김원중, 2006: 55).

이러한 민간조사업무에 대하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성구 외의 연구(2012)에서는 민간조사업을 민간영역에서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의뢰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라고 정의하였으며, 김향겸의 연구(2011)에서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사건의 의뢰나 부탁을 받고 일정한 경제적 소득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안영진, 2013: 462).

그리고 손상철의 연구(2011)에서는 민간조사업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

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였고, 정일석의 연구(2008)에서는 개인이나 업체가 사적인 신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강영숙의 연구(2006)에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였고, 황정익의 연구(2005)에서는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업무와 유사한 분야에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의 자격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조성구 외, 2012: 252).

이러한 민간조사업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탐정업법’이라 함) 제2조 1항을 통하여 정의하기를 “민간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주소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의뢰인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면접, 미행, 잠복 그 밖의 유사한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은 ① 조사주체는 민간인이고, ② 조사대상은 다른 민간인의 사람이며, ③ 조사동기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④ 조사목적은 사람의 소재와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⑤ 조사방법으로서 면접, 미행, 잠복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⑥ 조사결과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장석현·송병호, 2008: 339).

영국에서는 경비업법 제4조에서 민간조사업에 대해 민간조사업은 ①어느 특정 인물 또는 그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 ②재산이 멸실된 상황 또는 그 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감시, 조회 또는 조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조현빈, 2006: 279).

이렇듯 민간조사업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국가별·학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제공받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영역이 공권력을 제외한 수사업무를 대신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조사업의 국내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국내의 민간조사업의 기원은 일제하 ‘신용고지업’에서 찾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홍신소’라는 상호의 업체가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1961년 홍신업단속법의 제정에 따라 홍신소가 불법적인 채권추심대행, 청부폭력 등으로 집중 단속을 받게 되자, 1970년대 후반부터는 ‘심부름센터’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활동하였다. 1996년 OECD 가입, 한미 FTA 체결로 이미 외국의 거대 민간조사 기업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안영진, 2013: 461).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민간조사업체가 컨설팅, 탐정사무소,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안영진, 2013: 461).

특히, 민간경비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민간경비업에 속해 있는 민간조사업까지 질과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업은 공판중심주의, 로스쿨의 도입, 민간경비업의 국내시장 개방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2) 민간조사관의 업무영역

민간조사관의 활동영역은 다양한 범죄의 유형만큼이나 넓다. 과거에는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범주자를 경찰대신 잡거나, 경찰이 찾지 못하는 범죄증거를 대신하여 찾거나, 실종자를 찾는 일과 같이 비교적 제한적인 업무가 전부였으나, 최근에는 조사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청구 사건 및 화재·교통사고사건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 및 컨설팅업무, 민간기업 직원의 경력조사, 민간기업 내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조사, 민간기업 직원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조사 등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조사관련법이 아직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업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영국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의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민간조사관의 조사결과가 재판 시 원고나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고 국가기관의 지시 또한 위임을 받거나 정부기관에 고용되었을 때는 공공영역을 대신해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도 조사활동이 가능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이상원·박윤규, 2007: 341).

<표 1> 민간조사 업무영역

- 감시	- 조정(채무청구의 경우)
- 재산의 소재파악, 추적	- 컨설팅
- 사이버 범죄	- 직원의 경력조사
- 화재사건	- 명령
- 보험청구 또는 반대소송청구	- 공공기록조사
- 사고(항공기, 차량, 건설, 산업, 개인 등)	- 독점금지활동
- 경쟁적인 정보수집	- 저작권 및 상표 위반
- 비밀활동	- 근무지 위반 등
- 과실	- 실종자 소재파악
- 인수 및 합병	- 개인적 손해
- 거짓말 탐지기 조사	- 재산 및 순수가액청구
- 성희롱	- 재판준비
- 근로자의 배상	- 유용(타인의 재산에 대한 통제)
- 계약위반(사실과 가능한 손해의 결정)	- 산업 스파이
- 사기(부정행위)	- 부족 및 감소목록 조사
- 해운업조사	- 특허권 조사
- 채용조사	

※ 자료:이상원·박윤규(2007: 341) 재인용.

3) 민간조사관의 유형

민간조사관은 크게 자격 취득의 기준에 의한 구분과 전문분야별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격 취득의 기준에 의한 구별은 민간조사관으로서 가지는 자격을 국가자격시험과 교육을 거쳐 취득한 자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민간조사관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관을 전문분야 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법률민간조사관(Legal Investigator)은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조사원으로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증거나 자료를 대신 수집해주는 업무를 하거나 소송당사자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조사관이다. 이들은, 주로 소송에 필요한 증거 채증 및 증인의 확보,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민간조사관(Corporate Investigator)은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와 음모를 밝혀내는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임·횡령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조사·감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하는 신입직원의 신분조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민간조사관으로서, 자체적인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권한을 위임한 뒤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발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재정민간조사관(Financial Investigator)은 금전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조사관으로서, 기업 내의 횡령을 비롯한 사기사건을 담당한다. 재정민간조사관의 경우 기존의 법적지식 및 수사관련 지식만을 요구하는 형태의 민간조사관이 아닌 기업의 회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민간조사관(Insurance Investigator)은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원으로서, 보험금을 노리는 자해행위 및 기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원으로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만을 조사하지 않고, 보상범위가 넓은 화재사건 및 교통사고까지 조사하고 있어, 활동영역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조사원이다. 현재까지 민간조사관과 관련한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퇴직한 수사경력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다른 어떤 민간조사관 영역보다 전도유망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민간조사관(Cyber Investigator)은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민간조사관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 및 전자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이들은 주로 사이버 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증거 채증 및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한 채증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기타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제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그 영역이 더욱 방대하다.

특히, 최근 들어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관의 유형이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를 보다 쉽

게 인지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민간조사관의 유형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2> 민간조사의 영역

민간조사관	내용
법률민간조사관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민간조사관으로서,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증인확보, 경찰과의 면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검토, 법정에서의 증언 등의 업무를 수행함
기업민간조사관	의뢰인 회사의 내외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를 밝히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절도, 비용지출 내역의 허위사실, 상품선적 등에 있어서 사기 등을 조사하여 사실 확인함
재정민간조사관	금전과 관련된 횡령, 사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민간조사관으로서, 횡령당한 회사자금의 소재파악, 자금거래에 연구되어 있는 회사나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 사기 피해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업무를 수행함
보험민간조사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민간조사관으로서, 보험금 지급 전에 고의적인 신체상해 및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화재사고·교통사고 등과 같이 보상금액이 큰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사이버민간조사관	사이버 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민간조사관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채증행위를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채증 활동을 실시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간조사관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명확한 분류가 되지 않고 있다. 민간조사제도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일본에서는 민간조사관은 자격여부에 따라서 국가 또는 국가승인기관이 인증한 공인된 신분의 탐정과 일반탐정으로 나눌 수 있고 분야에 따라 일정한 교육의 이수 또는 경력, 전문성의 유무에 따라서 민간조사관을 구분하고 있다(이상원·박윤규, 2007: 339).

4) 민간조사제도의 외국 사례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민간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부족한 치안서비스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경찰과 동등하거나 그들의 부족한 치안서비스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간조사제도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민간조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에서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표 3>를 통하여 각국의 민간조사시행 및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민간인신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한역시 민간인신분을 고려한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 역시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수준이며, 경찰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모든 국

가에서는 자격에 있어서 반드시 전과기록이 없도록 규정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미리 차단하여 민간조사관의 질적 수준을 법안을 통하여 보장하고 있다.

<표 3> 외국의 민간경비 자격

국가	내용
미국	· 주(州)마다 상이하나 미국 시민권 소지자로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사경력,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 등 일정자격을 요구
스페인	· 스페인 국적을 보유하고 18세 이상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에 면허 취득 기회를 부여함 · 최근 2년 내 공직에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제한함
프랑스	·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외국인도 면허취득이 가능 ·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활동할 경우 프랑스 면허취득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독일	·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법인에서 이론, 실무, 법률, 법과학 등을 6개월 이상 교육 받은 후 법인에서 발급한 면허를 받아 활동가능 · 취득한 면허는 국가에서 공인하며 면허 취득자에게 준수법권이 부여됨
호주	·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일정 수준이 되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함
영국	·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직업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사무실을 열어 운영할 수 있음
일본	· 민간조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탐정 결격사유를 명시해 폭력단원 등 전과자의 민간조사업계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자료: 법률신문(2013).

2. 민간기업의 자체 감찰의 필요성

1) 민간기업 내부감찰의 의의

(1) 민간기업 내부감찰의 정의

감찰이란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감찰이라는 용어보다는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감찰의 의미를 논하기 이전에 감사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감사란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 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사에는 기업경영에 관해서 작성된 회계기록이 적정한가 또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준해서 작성되었는가를 분석·검토·비판하는 회계감사와 조직이나 제도의 정비 상태 및 운용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제도감사, 구매·제조·판매 등 업무활동의 경제성이나 능률을 판정하려는 업무감사가 있다.¹⁾

감사는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결산 보고를 위한 감사, 신용분석을 위한 감사, 투자분석을 위한 감

1) 네이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508&cid=200000000&categoryId=200000127>. 2013. 10. 28 검색.

사, 경영관리를 위한 감사 등으로 구분된다. 또 감사범위에 따라 정밀감사, 대차대조표 감사, 재무제표 감사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감사는 서류 및 기록 등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위에 대하여 감사하는 행위로서, 업무적인 영역을 감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특성이다. 그에 반해 감찰이란 것은 민간기업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이 통용되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공무원보다 약하며, 신분법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찰의 개념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생하는 기업 내부의 부패, 외부로 나타나는 기업이미지 실추행위, 기업의 주요 지적지식을 훔치는 행위가 점점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감찰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찰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찰이란 공공부문의 부정·비리에 대하여 규찰활동을 통해 공직자 개인 및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부패활동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신민철, 2013: 31).

이렇듯 감찰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행정 통제활동의 일환이었으나, 민간기업에서는 직원의 업무적인 활동에 대한 감사권한 밖에 존재하지 않아 직원의 윤리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따라서 민간기업 직원의 윤리성을 통제하고,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 내에 부정·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 내부적인 감찰활동이 필요하다.

2) 민간기업 내부 감찰의 필요성

(1) 기업의 윤리성 강화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 수립 또는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박상록·박현숙, 2013: 962).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에 대한 호감도와 태도를 향상시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제고하여(박상록·박현숙, 2013: 962), 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상록·박현숙, 2013: 96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의 윤리성 강화이다. 과거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적이자 가치관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 못지않게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윤리성이다. 기업의 윤리성은 기업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자체의 존망에 까지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기업의 높은 윤리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윤리성은 기업의 총수가 직원의 윤리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의 윤리성 확보가 직원관리에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 기업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원통제방법은 사전적인 활동인 교육과 사후적인 활동은 조사·감찰활동이 있다. 특히, 조사·감찰활동은 행정기관에서

쓰여지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민간기업에는 자체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졌으나, 감사활동은 서류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으로서 직원의 윤리성까지 확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윤리성 및 비위 활동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윤리성 강화를 위하여 조사·감찰활동이 필요하다.

(2) 기업 내부의 비위행위 개념의 확장

기존의 기업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비위행위 및 범죄행위는 기업의 비밀을 다른 기업에 팔아먹는것과 같은 산업스파이와 기업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배임행위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이미지조차 기업의 재산이라는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행위까지 비위행위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내부의 비위행위는 과거와 달리 널리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과거와 달리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급속도로 전파되어 결국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을 파산직전까지 몰고가기도 한다. 실례로 기업 오너의 살인사건 및 거짓말, 의사를 매수하여 형집행정지를 받은 ‘영남제분사건’은 건실한 중견기업을 상장폐지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기업 오너의 폭력행위·배임 등을 저지른 ‘피죤 사건’역시 기업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민간기업 내 비위행위의 증가는 기업 내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훼손 시킴과 동시에 매출에 영향을 주어 결국 기업의 존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비위행위는 과거와 달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비위행위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으며, 두 번째,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기업의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세 번째,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며, 네 번째,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는 최근 발생한 ‘대기업 임원의 여객기 승무원 폭언’사건에서와 같이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어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본인이 속해 있는 기업의 구매의욕을 감소시켜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기업의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로는 기업총수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과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 총수들의 배임행위 및 비자금 조성행위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or Crime)의 증가는 기업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대기업 주주들의 재산에 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최근에는 대기업총수들의 배임 및 비위행위에 대하여 검찰 및 경찰 등의 사법기관에서는 관용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세 번째,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의

기술을 고의적으로 누출시켜 피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시켜 기업의 이익을 방해하여 피해를 준다. 특히, 기업의 기밀유출과 같은 위법행위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핸드폰 및 컴퓨터 등과 같은 전문기기의 발달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적인 발달로 인하여 많은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관련기업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네 번째,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로서, 고의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업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소재를 확인해야 하며,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비위행위의 개념 확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듯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 기업 내부의 비위행위역시도 확장되고 있다. 확장된 개념을 바탕으로 민간조사관의 내부감찰활동에 적용시켜야 한다.

3) 기업의 민간조사제도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장

많은 선행연구들은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매년 빠지지 않고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민간기업의 의뢰를 통한 활동이다. 특히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밀유출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민간조사관의 조사 시 이승철의 연구(2008)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과 기업이 공적 사법기관의 수사보다는 민간조사관에게 의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아나 실종자의 처리, 경제범죄의 처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치안 서비스 제공 등을 예로 들면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도입에 있어서 민간조사업의 업무가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에 따른 규제 또한 필요함을 역설 했다(이승철, 2008: 255).

신성균·박상진의 연구(2009)에서는 민간조사관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에서 산업보안 분야에서 공적인 사법기관의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 대안으로 민간조사관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 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신성균·박상진, 2009: 199-200).

유형창(2011)은 현대기업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현재 한국기업이 답습하는 낮은 수준의 보안방법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주장하였다. 21세기 기업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안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기업의 보고라인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유형창, 2011: 105-106). 현대기업의 보안리스크는 경영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보안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전략적인 접근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였다(유형창, 2011: 126).

이렇듯 사회가 발달해 감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많은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감사만으로는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기업범죄 및 내부 비위행위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

화이트 칼러 범죄(White Collar Crime)나 기업범죄는 대부분 직업적 영업활동과 관련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계획적·조직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기능 이른바 경제의 제도적 기능 이른바 경제의 제도적 기능을 보호법적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그 피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유병규, 2003: 236).

이러한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도 갈수록 세분화·전문화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타법규에 위임하는 백지위임입법,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대처하고 입법의 고정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일반조항 등의 기술이 발달하여 수사요원이 이와 같은 입법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기업범죄를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또한 관련법규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동이 심하여 수사요원이 회계, 부기, 금융, 무역 등 제반 기업분야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기업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 수사요원의 전문화가 요구된다(유병규, 2003: 236).

따라서 민간기업이 고용한 민간조사관 전문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산업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 산업스파이를 비롯하여 기업 내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영역의 전문성을 비롯하여, 회계·금융·무역 등 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III. 민간조사제도 활용방안

1. 업무범위의 설정

민간조사업 업무관련 규정은 민간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사법을 비롯한 다른 유사 업종과의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업무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여 규정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업무 외의 거의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 업무를 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타 영역과의 업

무상 충돌은 물론 타 법률과의 충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일석, 2008: 217).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에는 ① 실종자, 미아, 국내·외 도피사범, 수유 불명재산의 소유자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파악과 이에 대한 정보 제공, ② 분실·도난·도피자산, 소재 불명 물건 등 특정 재산에 대한 조사 및 소재파악, ③ 법원(또는 법무부)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소송 및 증거자료 수집 및 제공, ④ 각종 사고 또는 범죄의 원인 조사, ⑤ 산업기밀 유출, 보험 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시업회계부정, 사이버범죄 등 위법행위 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김동기, 2011: 67).

우리나라의 경우 발의되었던 민간조사관련법안들 중에서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상배 법안에서는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를 업무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최재천 법안에서는 이상배 법안과 비교하여 보다 축소된 범위에서 업무범위를 정하면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를 포함시켜 다양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인기 법안에서는 변호사법이라든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정해 놓은 영역을 훼손하지 않고 있어, 업무범위가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송영근 법안에서는 미아나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으로 업무영역이 과거 법안에 비해 축소되었다.

<표 4> 민간경비에 대한 의원의 발의안

구분	업무범위
이상배 발의안	1.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최재천 발의안	1. 범죄 및 사고의 원인과 책임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3. 사람의 사망·실종·도피·가출 조사 4.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 자료의 확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표 4> 민간경비에 대한 의원의 발의안(계속)

구분	업무범위
하순봉 발의안	1. 범죄 조사 및 위법·보당행위의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영예훼손의 원인과 그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 5.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이인기 발의안	1.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2.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 파악 3.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
강성천 발의안	1. 미아·가출인·실종자·소재 불명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송영근 발의안	1. 미아나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4.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 자료: 정일식(2008: 274) 재인용 및 편집.

이렇듯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각 의원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안은 “경찰에서 주도하느냐?” 혹은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짐과 동시에 “어느 영역까지 확장하느냐?”에 대한 충돌로 인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 및 민간조사영역의 확장을 바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제안하였다.

민간조사업법 업무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법안의 업무내용을 종합하여 중복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내부감찰을 위한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면, 첫 번째 직원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직원의 범죄행위라고 함은 기업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비롯하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직원의 범죄행위는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업무적인 기밀을 훔치는 행위를 비롯하여, 배임행위, 외부에서 저지르는 직원의 범죄행위까지 감찰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두 번째,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 및 기밀의 확인을 위한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산의 도난당할 경우 이를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도난당한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의 재산이나 비밀은 상황에 따라 경찰에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 및 기밀의 확인을 위한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근무하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직원의 비위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확한 신원파악 및 확인활동, 근무하는 직원의 외부에서 저질러지는 비위활동 예방 및 통제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2. 권한과 한계의 정립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취득 및 사용에 대한 권리보장, 그리고 각종 미해결 사건 또는 수사 및 소송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의 정보활동을 국가 허가한 자에 대해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수행을 통해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그리고 자본에 의한 정보 독점 등 그 피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찰 혹은 관련 공무원의 강제성을 가진 업무의 한 분야인 감찰 및 조사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민간조사관이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조사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일반인과 같은 강제력 없는 임의수사 내지 조사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 발의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조사관 역시 민간인이며, 민간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는 것이 민간기업 내의 내부감찰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인이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민간기업을 통하여 고용된 민간조사관일지라도 피 감찰 대상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민간조사관의 업무영역의 설정은 민간조사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하며 제한기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제한의 내용은 당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된다(이상훈, 2009).

위 내용에 대하여 2013년에 발의된 송영근 의원 발의 안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국가·산업스파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조사관은 국가의 안보나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려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발의하였다.

3. 기업 내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민간조사활동

감찰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감찰은 두 가지 상이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는 검사관(Inspectorate)으로서의 기능으로 감찰 대상기관이 합법적·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원이나 고객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반부패부서(Anti-corruption unit)으로서의 기능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한 부서에 의해 병행 실시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분리되어 수행되기도 한다(신민철, 2013: 37).

반부패기능으로서의 감찰의 성격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감찰과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및 내부감사(Internal Audit)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에서 내부통

제는 기관 내부의 관리자들이 필수적 업무활동을 확립·감시하도록 하는 포괄적·일관적인 관리 개념으로 규정되어 진다(신민철, 2013: 38).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내부통제는 조직이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모든 관련법, 규칙, 규정에 부합하며 그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수단들로 규정되며(Internal Control Task Force, 2006; 신민철, 2013: 38), 내부감사는 이러한 내부통제의 한 수단으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규칙·규정의 준수여부와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을 발견하여 시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부 통제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신민철, 2013: 38).

이러한 반부패 기능으로서 감찰은 행정 내부통제의 측면에서 감사활동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자들이 수행하는 법·규칙·규정 준수를 비롯한 일체의 관리행위 전반에 나타나는 불법 및 부당행위 일체를 평가, 검토하고 조사적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는 적극적이 통제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신민철, 2013: 38).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민간기업의 감찰활동은 두 번째에서 언급한 반부패부서의 기능이 민간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정행위 및 비위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내의 효과적인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결론

기업이 증가하고 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내부의 기밀유출 및 영업비밀의 유출, 배임, 직원의 비위행위 등과 같은 기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내부감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내부감찰 및 조사를 위하여 현재까지는 외부기관 감사 혹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는 했지만, 서류위주의 검토와 조사가 전부인 감사로는 윤리성을 논하는 문제 및 기동성이 요구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 조사·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해결책에 대하여 많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문제가 발생 시 사법기관보다 민간조사관을 더욱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승철의 연구(2008)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과 기업이 공적 사법기관의 수사보다는 민간조사관에게 의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아나 실종자의 처리, 경제범죄의 처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치안 서비스 제공 등을 예로 들면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도입에 있어서 민간조사업의 업무가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에 따른 규제 또한 필요함을 역설 했다(이승철, 2008: 255).

민간기업의 내부 조사·감찰을 위하여 제안한 민간조사제도는 첫 번째 직원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직원의 범죄행위라고 함은 기업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비롯하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직원의 범죄행위는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업무적인 기밀을 훔치는 행위를 비롯하여, 배임행위, 외부에서 저지르는 직원의 범죄행위까지 감찰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두 번째,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 및 기밀의 확인을 위한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기업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산의 도난당할 경우 이를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도난당한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의 재산이나 비밀은 상황에 따라 경찰에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 및 기밀의 확인을 위한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근무하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직원의 비위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확한 신원 파악 및 확인활동, 근무하는 직원의 외부에서 저질러지는 비위활동 예방 및 통제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간조사관을 활용한 내부 조사·감찰은 업무의 특성 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며, 직원의 신상조사 및 비위행위 조사를 위하여 사생활을 조사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민간조사관련법을 제정하여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을 민간조사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하며 제한기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제한의 내용은 당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된다(이상훈 2009).

특히, 경찰 혹은 관련 공무원의 강제성을 가진 업무의 한 분야인 감찰 및 조사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민간조사관이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조사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일반인과 같은 강제력 없는 임의수사 내지 조사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 발의 시 반드시 포함하여 민간조사관을 활용한 내부 조사·감찰로 급증하는 기업 내 비위행위, 배임,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밀유출을 예방·진압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영숙. 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기. 2011.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중. 2006.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53-72.
- 김향겸. 2011.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조직윤리태도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안전학회지. 7(1): 7-32.

- 박상록, 박현숙.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이미지 형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6(4): 961-985.
- 손상철. 2007.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131-162.
- 신민철. 2013.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31-54.
- 신성균, 박상진. 2009. 민간조사관(탐정)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199-228.
- 안영진. 2013.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14(2): 459-482.
- 유병규. 2013.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형창. 2011. 기업보안과 비즈니스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03-130.
- 이상원, 박윤규. 2007.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337-365.
- 이상훈. 2009.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249-270.
- 이승철. 2008.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55-276.
- 이하섭. 2013. 민간조사관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7(1): 135-164.
- 이하섭, 조현빈. 2012.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산업보안 활동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7: 257-281.
- 이하섭, 조현빈. 2012. 한국민간조사업의 실태와 입법방향. 한국경찰학회보. 35: 133-162.
- 장석현, 송병호. 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 335-365.
- 정일석. 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구, 이주락, 김동제. 2012.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249-270.
- 조현빈. 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71-296.
- 황정익. 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경기: 치안연구소.

이하섭: 한성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2011),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찰학, 통일경찰, 민간경비 등이 주요 관심 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조사에 관한 연구(2013)”, “경찰공무원 유대관계가 업무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2013)”, 등이 있다(sublh@hanmail.net).